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
2021. 8.

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
(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)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우편법에 근거한 소포우편서비스가 민간영역의 택배와 구별되는 공적 우편서비스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택배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14호 중 “우체국택배”를 “우체국방문소포”로 한다.

제11조제5항제2호 중 “택배·국제특급”을 “방문소포·국제특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3조(경영기획실장) ① ~ ③ (생략)	제3조(경영기획실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재정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.	④ ----- ----- ---
1. ~ 13.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우체국택배 및 부동산임대수익의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	14. <u>우체국방문소포</u> ----- -----
15.·16. (생략)	15.·16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우정사업정보센터) ① ~ ④ (생략)	제11조(우정사업정보센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우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⑤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택배·국제특급</u> 접수 및 배달의 전산·정보 관리	2. <u>방문소포·국제특급</u> ----- -----
3. ~ 11. (생략)	3. ~ 11. (현행과 같음)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